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1. 25.(화) 12:00
(지 면) 2025. 11. 26.(수) 조간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확대 등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25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 ※ (기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였으나,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셋째,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가 신설된다.

-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이나, 앞으로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시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을 명함, 기간은 1년 원칙(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

○ 넷째, 스톡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 기존 성비위 뿐만 아니라 스톡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구효선 (044-205-3341)
		담당자	서기관	오연순 (044-205-3342)



참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 '25.12월 국회 제출 예정(국가직 동일)

구분	현행	개정안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근거 마련 (안 제48조·제49조)	-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 있음 - 다만,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미비	상사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제시, 이행거부 및 불이익 처분 금지 등 근거 마련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안 제64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난임휴직 신설 (안 제41조·제64조)	난임 치료 시에 직권휴직(본인의 의사와 무관)인 질병휴직으로 활용	청원휴직(본인이 원하여 신청) 사유로 난임휴직 신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67조제73조의2)	- 피해자에게 징계결과 통보의무는 없으며, 징계시효는 3년 ※ 성비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결과 통보 의무화, 징계시효 10년	피해자 요청 시에는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징계시효 10년
중대 비위자 의원면직 제한 절차 개선 (안 제69조의4)	-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판단되는 경우 퇴직 제한 *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사유 ** 비위관련 △형사사건 기소,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행정기관 내부감사조사 중,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	중징계 사유 부존재 시에는 의원면직 의무 명시, 면직 허용 시에는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 신설